

혼 인 문 서 봉 투

	신 량	신 부	
성 명			
세 례 명			
종 교			
교 적	교구 본당	교구 본당	
	구역 반 호	구역 반 호	

동봉한 문서에 대한 확인		신량	신부
1. 혼인 신청서	양식 1호		
2.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양식 2호		
3. 세례 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뒷면 사용 설명서 양식3호 혼인 공시 ㄷ 참조)			
5. 혼인 공시	양식 3호		
6. 혼인 장애 판명서	양식 4호		
7. 혼인 통지서 접수 확인서	① 세례 본당 회신 ※ 양식 5호		
	② 교적 본당 회신 ※ 양식 5호		
8.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	양식 6호		
9. 혼인 주례권 위임서	양식 7호		
10. 혼인 증인의 확인서	양식 8호		
1.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진술서	양식 특1호		
2. 바오로 특전을 위한 질문서	양식 특2호		
3. 바오로 특전을 위한 조사 결론	양식 특3호		
4. 사망 추정을 위한 조사서와 신고서	양식 특4호		
5. 혼인 무효 선고를 위한 조사서와 무효 신고서	양식 특5호		
6.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청원자의 진술서	양식 특6호		
7.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사제의 건의서	양식 특7호		
8. 혼인의 근본 유효화 인정서(본당 보관용)	양식 특8호		

1. 성 사 혼	
2. 관 면 혼	

〈위 혼인 중 반드시 하나 표시〉

1. 단순 유효화혼	
2. 바오로 특전혼	
3. 근본 유효화혼	
4. 혼 중 혼	

〈위 혼인 중 해당 사항 표시〉

증빙서류	
1. 혼인 무효 신고서	
2. 사망 추정 신고서	
3. 혼인 교리 이수증	
4.	
5.	
6.	

주 의

어떠한 혼인이든지 교회 혼인에 관한 모든 문서는 이 봉투에 넣어서 주례한 본당이 보관하고 혼인 무효 소송이 제기될 때 모든 서류를 교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혼 인 장 소	교구	본당
혼인성사대장	제	년 호
혼 인 일 시	년 월	일 시

주례 사제의 문서 확인

본인은 동봉한 문서를 확인하고 혼인을 주례하였음.

주례 사제

교구 직권자의 검열

_____년 _____월 _____일

교구 직권자

혼인 사목과 문서 처리 확인	신량	신부
1. 혼인 전에 신량과 교리를 지도하였는가?		
〈2항 이하의 내용은 사목 문서가 전산화되지 않은 본당에서만 표시할 것〉		
2. 혼인 본당 자체 혼인성사 대장에 기재하였는가?		
3. 혼인 본당 자체 세례성사 대장에 기재하였는가?		
4. 혼인 본당 자체 교적에 기재하였는가?		
5. 세례 받은 타 본당에 통지하였는가?		
6. 세례 문서가 있는 교구청에 통지하였는가?		
7. 교적이 있는 타 본당에 통지하였는가?		

혼인 문서의 사용 설명서

주의 사항

혼인 관계 서류

혼인 관계 서류는 혼인 전에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서류가 미비되었을 경우에, 주임 사제는 혼인 장애가 없다는 심증이 있으면 혼인을 허락할 수 있지만, 혼인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이 유와 상황을 기록하여 이 봉투에 동봉해야 한다.

국가법상 금지된 혼인

교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국가법상 금지되어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는 혼인은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본당 신부가 주례할 수 없다.

양식 1호 혼인 신청서

- ㄱ. 교회법상으로는 혼인 당사자의 신분에 대한 예비 조사의 성격이 있고, 사목상으로는 혼인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 ㄴ. 성사적으로는 혼인성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더 신중히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양식 2호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교회법 제1067조의 규정에 따라 혼인의 유효성과 적법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아래의 4가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서식은 바로로 특전혼과 근본 유효화혼을 제외한 모든 혼인에 필수적이다.

- ㄱ. 혼인 당사자들에 대한 교회법과 민법에 정해진 장애의 유무를 확인하고,
- ㄴ. 혼인의 의미, 혼인의 목적과 특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며,
- ㄷ. 당사자들의 혼인 결정이 강박이나 속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알아보고,
- ㄹ. 혼인 장애가 있을 경우, 사제는 이 장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면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양식 3호 혼인 공시

- ㄱ. 혼인 당사자들의 장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혼인 당사자가 소속된 본당에서 한다.
- ㄴ. 혼인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신분을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뿐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로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혼인관계증명서'로 장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혼인 공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 ㄷ. '혼인 관계 증명서' 중 배우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상세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 ㄹ.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혼인 공시를 해야 한다.

양식 4호 혼인 장애 관면서

- ㄱ. 사제가 관면할 수 있는 장애라도 관면 없이 혼인하면 그 혼인은 무효다.
- ㄴ. 사제는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와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를 관면할 수 없다.
- ㄷ. 관면이 유효하려면 사제의 지향만으로는 안 되며, 외적 법정에서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교회법 제37조: 제74조 참조).

양식 5호 혼인 통지서(교회법 제1121조: 제1122조)

혼인 사실은 혼인성사 대장뿐 아니라 세례성사 대장과 교적에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

서 세례 받은 본당이나 교적 본당에서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세례 본당과 교적 본당에 빨리 통지해야 한다.

양식 6호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

혼인 당사자들의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 혼인이 거행될 때에는 혼인 당사자들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필요하다.

양식 7호 혼인 주례권 위임서

한국에서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16조 2항에 따라 교구의 모든 사제가 교구장에게서 혼인 주례권을 일반적으로 위임받았다. 타 교구 소속 사제나 주례권 일반 위임을 받지 않은 사제가 주례할 때에는 혼인 거행지 주임 사제에게서 주례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양식 8호 혼인 증인의 확인서

교회법 제1108조의 규정에 따라 혼인 예식의 유효성을 위하여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양식 특1호 바로로 특전을 위한 진술서(교회법 제1143-1150조)

- ㄱ. 이 진술서는 재판 외 약식 소송 진술서로서 바로로 특전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경우 필수적인 것이며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를 대신한다.
- ㄴ. 바로로 특전의 적용 여부와 당사자들의 혼인 장애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한다.

양식 특2호 바로로 특전을 위한 질문서(교회법 제1144조)

- ㄱ. 바로로 특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질문을 관면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떠나버린 상대방에게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한다.
- ㄴ. 질문은 직접 대면해서 하든지 등기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양식 특3호 바로로 특전을 위한 조사 결론

사제는 바로로 특전을 적용하기 위해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양식 특4호 사망 추정을 위한 조사서(교회법 제1707조)와 신고서

국가나 교회의 공식 사망 증명서가 없는 사람의 사망에 대하여 심증이 갈 때는 조사함으로써 사망 추정을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신고 후에는 사망 추정자의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있다.

양식 특5호 혼인 무효 신고를 위한 조사서와 무효 신고서

- ㄱ. 당사자들의 혼인이 무효임을 알기 위한 재판 외 약식 소송을 위한 진술서이다.
- ㄴ. 재혼하려는 당사자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경우 그 혼인의 인연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양식 특6호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청원자의 진술서

(교회법 제1161-1165조)

- ㄱ. 교구 직권자에게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신청하기 위한 당사자의 진술서이다.
- ㄴ. 이 진술서는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를 대신하는 것이다.

양식 특7호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사제의 건의서

교구 직권자에게 해당 신자의 근본 유효화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제가 작성하는 것이다.

양식 특8호 혼인의 근본 유효화 인정서

교구 직권자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교구청에 보관하고, 1부는 혼인 문서 봉투에 넣어 본당에서 보관한다.